

중국은행 서울지점 기업뱅킹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주식회사 중국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이라 함)과 은행이 제공하는 "기업 인터넷뱅킹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는 이용기관(이하 "이용자"라 함)과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기타 해당업무의 개별 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은행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의 일정한 행위에 의하여 계좌이체 및 기타 은행이 정하는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것을 총괄하여 지칭합니다.
2. "이용자"란 등록자, 확인자, 승인자의 각 권한을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칭합니다.
3.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은행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등록자"라 함은 개별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최초로 등록할 권한이 있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5. "확인자"라 함은 개별 금융거래에 있어서 등록된 거래지시를 승인자의 승인 전에 확인할 권한이 있는 다단계 결재상의 이용자를 말합니다.
6. "승인자"라 함은 개별 금융거래에 있어서 보안매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등록된 거래지시를 승인하여 거래지시를 완성할 권한이 있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7. "보안매체"라 함은 은행이 서비스 계약 시에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안전을 위한 장치로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접근매체 중에서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E-TOKEN(OTP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등을 말합니다.

8. "보안매체 비밀번호"라 함은 서비스상 정당한 처리 지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보안매체에서 발생한 번호를 말합니다.

9. "단독 결제"라 함은 등록자의 권한을 겸하는 승인자 1인의 거래지시에 의하여 전자금융 거래가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10. "다단계 결제"라 함은 등록자가 거래지시를 등록하고 승인자의 승인으로 거래지시가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전자적 장치)

이용자는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서비스의 종류)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각종 조회, 이체 등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제5조(계약의 성립)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이용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은행이 이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결제 단계)

① 이용자는 단독결제와 다단계 결제 중 결제 단계를 선택하여야 하며, 지정된 결제 단계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은행에 신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이용자가 이용신청서에 지정한 이용자 수량만큼 보안매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이용자의 지정·변경 및 권한설정)

① 이용자의 지정·변경 및 권한설정은 서면 이용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② 이용자가 다단계 결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이용신청서 상에 확인자 및 승인자를 지정하고 각각의 권한을 명확히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8조(이용자의 확인)

은행은 다음 인터넷뱅킹 이용자의 이용자 확인 항목 중 은행이 요구하는 해당 항목을 이용자가 입력했을 때 입력한 내용이 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이용자를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본인으로 간주하고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자 확인 항목: 이용자 ID, 로그인 비밀번호, 로그인을 위한 확인 번호, 보안매체 비밀번호

제9조(이체 거래한도)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별표 1]의 각 항목별 최고한도범위 내에서 1회 이체한도, 1일 이체한도(이하 "항목별 이체한도"라 함)를 정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서 지정된 항목별 이체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계좌이체 이용계좌)

이용자는 자신의 계좌이체 거래지시로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미리 지정(등록)하여 계좌에 입금합니다.

제11조(거래지시의 일반적 처리기준)

① 은행은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와 보안매체 비밀번호가 은행에 신고 또는 등록된 것과 대조하여 일치하는 경우에만 거래지시에 따라 처리합니다.

② 확인자 또는 승인자가 복수로 지정된 경우에는 각각의 지정된 업무권한 대로 처리합니다.

③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처리 완료된 거래지시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제12조(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처리기준)

- ①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는 은행이 거래지시의 내용을 확인한 때에 거래가 성립합니다.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를 위해 필요한 이체자금은 이체 지정일의 은행에서 정한 이체처리 시간 전에 출금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지불가능잔액이 이용자가 거래 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합니다.
- ② 이체실행은 1회의 실행으로 하고 이체불능 건에 대한 재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 ③ 이체 지정일에 복수의 예약이체 의뢰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접수 받은 순서에 따라 처리합니다.
- ④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취소는 은행이 정한 시간 전까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서비스의 제한과 재개)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각자 입력한 로그인 비밀번호 또는 보안매체비밀번호가 은행에 신고 또는 등록된 것과 각 5회이상 다르게 입력된 경우.
 2. 은행 영업시간 종료 후 및 영업일이 아닌 경우
 3. 사고신고 접수된 서비스. 단, 사고신고 되지 않은 서비스는 이용가능
- ② 서비스가 제한된 경우 이용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수수료)

①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은행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별표2]와 같습니다.

② 수수료의 납부 방법

은행은 서비스 실행과 동시에 출금되는 계좌에서 이체자금과 함께 자동출금하며, 은행은 수수료의 출금을 위하여 별도의 예금청구서, 통장 등의 제시 없이 출금하여 수수료에 충

당합니다.

③ 기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는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15조(분실신고 및 제변경)

① 보안매체의 분실, 도난 및 각종 비밀번호 누설 등 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거래 영업점에 은행과 협의한 방식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 후 익영업일까지 서면으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은행에 신고한 출금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은행에 신고한 이체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가 이용자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6조(거래내용의 확인)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제17조(계약의 해지 및 해지사유)

① 은행은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보 후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은행이 정한 기간 내에 중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경우

2.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범죄수익의 은닉, 자금세탁,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이용자는 은행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손실부담 및 면책)

본 약관에 의한 서비스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약관 제 19조(손해배상 및 면책)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9조(관할법원)

본 계약상의 해석이나 이해에 있어 상호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협의를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0조(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본 약관의 각 당사자는 이 약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다른 당사자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2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이체 최고한도 범위

| 구 분 | 1회 이체한도 | 1일 이체한도 |
|-------|---------|---------|
| 인터넷뱅킹 | 10억원 | 50억원 |

※ 기타 세부기준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 협의에 의하여 조정 가능.

[별표 2] 수수료

| 서비스 종류 | 징수방법 | 산출기준 | 수수료금액 | 비 고 |
|---------|------|-------|--|-----|
| 자금이체수수료 | 즉시 | 처리건 당 | 당행: 무료 타행원화: 400원(100만원 이하) 600원(100만원 초과) | - |